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697
----------	------------

제안연월일 : 2019년 11월 21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부과 당해연도 내에 적극적 징수를 위하여 부과 다음연도 2월까지 징수하는 체납액은 현행과 같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포상금 지급 범위를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취득세원으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며,
- 공동징수분 세입징수포상금 분배 방법 등 본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하여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수단을 마련하고,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난년도 체납액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지난년도 체납액을 '부과월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에서 현행과 같이 '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 탈루 세원 발굴 포상금 지급 범위를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신고납부 세원'에서 현행과 같이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으로 함(안 제3조제5호).
-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제 11조 신설).
- 본 조례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로 함(안 부칙 제1조).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항제3호 중 “부과월로부터”를 “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로 한다.

안 제3조제5호 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신고납부”를 “취득”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지급대상) ① (생략)</p> <p>1. 지난년도 체납액(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p> <p>2. ~ 6. (생략)</p> <p>② ~ ⑥ (생략)</p>	<p>제2조(지급대상) ① (생략)</p> <p>1. ~ 2. (생략)</p> <p>3. 지난년도 체납액(부과월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p> <p>4. ~ 7.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2조(지급대상) ① (생략)</p> <p>1. ~ 2. (개정안과 같음)</p> <p>3. 지난년도 체납액(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p> <p>4. ~ 7. (개정안과 같음)</p> <p>② ~ ④ (개정안과 같음)</p>
<p>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p> <p>1. ~ 4. (생략)</p> <p>5.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p> <p>6. ~ 8. (생략)</p>	<p>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p> <p>1. ~ 4. (생략)</p> <p>5.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신고납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p> <p>6. ~ 8. (생략)</p>	<p>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p> <p>1. ~ 4. (개정안과 같음)</p> <p>5.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p> <p>6. ~ 8. (개정안과 같음)</p>
	〈신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현행	개정안	수정안
		<u>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부칙 (생략)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지급기준 및 지급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부과분부터, 제4조 및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징수분부터 적용한다.</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지급기준 및 지급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징수분부터 적용한다.</p>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지난년도 체납액(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4.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5.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6.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보조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민간인
7.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제1항제3호”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제2조제3항 및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제2조제4항(중전의 제5항) 본문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를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제2조제1항제6호”를 “제2조제1항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포탈공제”를 “포탈·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결손처분된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액체납액 중 결손처분(부분결손

제외)된 고액체납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제2조의 지급대상이 되는 징수액의 1,000분의 43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소송승소(다만,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포상금 또는 특별포상금을 지급하는 소송사건은 제외한다)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공적에 따라 5백만원을 한도로 징수액의 100분의 1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임할 수 없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위원은 호선으로 정한다.

제6조제9항(종전의 제8항) 단서 중 “제2조제1항제3호”를 “제2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제3조”를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제3조”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조제1항제3호”를 “제2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제2호”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재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지급대상)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지난년도 체납액(부과 당해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 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u> 2. <u>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u> 3. <u>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u> 4. <u>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민간</u> 	<p>제2조(지급대상) ①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u> 2. <u>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u> 3. <u>지난년도 체납액(부과 당해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 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u> 4. <u>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u>

현행	개정안
<p><u>인</u></p> <p>5. <u>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보조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민간인</u></p> <p>6. <u>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u></p> <p>② <u>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u></p> <p>1. (생략)</p> <p>2. <u>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거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u></p> <p>3. <u>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u></p> <p>③ <u>제1항제4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u></p>	<p><u>또는 민간인</u></p> <p>5. <u>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u></p> <p>6. <u>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보조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민간인</u></p> <p>7. <u>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u></p> <p>② <u>제1항제3호</u>----- ----- ----- ----- <u>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u>----- ----- -----</p> <p>1. (현행과 같음) <u><삭 제></u></p> <p>2. <u>제1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u></p> <p><u><삭 제></u></p>

현행	개정안
<p><u>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u></p> <p>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p> <p>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p> <p>3. 그 밖에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p> <p>④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1. ~ 3. (생략)</p> <p><신설></p> <p>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p>	<p>③ 제1항제3호-----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u></p> <p>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p>

현행	개정안
<p>고 국장급(시는 3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4급 공무원)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 ----- ----- ----- ----- -----.</p>
<p><u>⑥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본인의 성명 및 주소를 문서에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u></p>	<p><u><삭 제></u></p>
<p>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생략) 5.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 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u>제2조제1항제6호</u>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촉탁교부금 수입의 100분의 5 7.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u>포탈공제</u> 또는 환급 	<p>제3조(지급기준)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현행과 같음) 5. <u>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 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u> 6. <u>제2조제1항제7호</u>----- ----- ----- 7. ----- ----- <u>포탈·공제</u> -----

현행	개정안
<p>받은 자를 적발하여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p>	<p>----- ----- ----- ----- -----</p>
<p>8.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u>위원회</u>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p>	<p>8. ----- ----- <u>서울특별시</u> <u>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u>----- --</p>
<p><u>제4조(결손처분된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①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고액체납시세 중 결손처분(부분결손 제외)된 고액체납시세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u></p>	<p><u>제4조(결손처분된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액체납액 중 결손처분(부분결손 제외)된 고액체납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제2조의 지급대상이 되는 징수액의 1,000분의 43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u></p>
<p>1. <u>시효소멸 잔여연수가 1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순징수액의 100분의 7</u></p>	
<p>2. <u>시효소멸 잔여연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순징수액의 100분의 6</u></p>	
<p>3. <u>시효소멸 잔여연수가 2년 이상 3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u></p>	

현행	개정안
<p><u>순징수액의 100분의 5</u></p> <p>4. <u>시효소멸 잔여연수가 3년 이상 4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순징수액의 100분의 4</u></p> <p>5. <u>시효소멸 잔여연수가 4년 이상인 세액의 경우 : 순징수액의 100분의 3</u></p> <p>② <u>제1항의 순징수액이란 총징수액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본징수경비 및 징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u></p> <p>제5조(지급한도) ① <u>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민간인에 대한 지급한도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다.</u></p> <p>1. 2. (생략)</p> <p>②·③ (생략)</p> <p>④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장이 혼, 은닉재산 추적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인정한 공적에 따라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백만원까지 지</u></p>	<p>제5조(지급한도) ① ----- ----- ----- ----- - <u><단서 삭제></u></p> <p>1. 2.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장이 혼, 은닉재산 추적, 소송승소 (다만,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포상금 또는 특별포상</u></p>

현행	개정안
<p><u>급할 수 있다.</u></p> <p>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u>위원회를 둔다.</u></p> <p>②·③ (생략)</p> <p>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연임할 수 없다.</u></p> <p><u><신설></u></p> <p>⑤ ~ ⑦ (생략)</p> <p>⑧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p>	<p><u>금을 지급하는 소송사건은 제외한다)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공적에 따라 5백만원을 한도로 징수액의 100분의 1을 지급할 수 있다.</u></p> <p>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 ----- ----- -----</p> <p><u>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 한 ----- ----- <u>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p>⑤ <u>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위원은 호선으로 정한다.</u></p> <p>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p> <p>⑨ ----- -----.</p>

현행	개정안
<p>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p> <p>④ -----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제2호----- ----- ----- ----- ----- -.</p> <p><u>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